

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2차 본회의

2015. 12. 11.(금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회 운영 위원회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12. 4.
- 나. 제출자 : 이성복 · 강철우 · 표주숙 · 권재경 · 김종두 ·
최광열 · 형남현 · 이홍희 · 변상원 · 박희순 ·
김향란 의원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2. 4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12. 8.

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인 “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”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도 월정수당에서 3.8% 인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금액 변경 (안 제6조 제2항)
 - 1,593,290원 ⇒ 1,653,830원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액(월정수당 3.8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